

# 자율수출관리규정 5차 개정 내용

## 변경 전

### 제3조 (정의)

② “전략물자”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하여 수출통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 내지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해당되는 물품 등(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포함)을 말한다.

③ “상황허가대상”이란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으로, 해당수출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50조 (상황허가의 대상)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허가기관의 장에게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개발 등”이란 개발, 제조, 사용 혹은 저장을 말한다.

⑥ “수요자”란 전략물자의 수입자,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및 이들의 대리인을 말한다.

⑦ -----  
-----  
-----.

⑧ -----  
-----  
-----.

⑨ “재수출”이란 수입한 전략물자를 원형대로

## 변경 후

### 제3조 (정의)

② -----  
-----  
-----  
-----에 해당되는 물품등(전략물자를 분리가능한 부분품으로 포함하고 있는 물품등을 포함)을 말한다.

③ -----  
-----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6의 “나”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 등의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그 물품 등을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그러한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 허가기관의 장에게 상황허가를 신청해야한다.

삭제

삭제

⑤ -----  
-----  
-----.

⑥ -----  
-----  
-----.

⑦ “재수출”이라 함은 국내에서 수출한 물품

수출하는 것과 수입한 전략물자를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 등(해당 물품이 전략물자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을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⑩ “기술이전”이라 함은 전화·모사전송·정보통신망 등 전자적인 매체를 통하여 이전하는 경우나 지시, 교육, 훈련, 실연, 전달 등 구두 또는 행위를 통하여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⑪ “등급조정”이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신청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조치에 따라 지정 등급이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⑫ “우려거래자 명단”이란 전략물자수출관리정보시스템([www.yestrade.go.kr](http://www.yestrade.go.kr))을 통해 거래 시 유의가 필요한 자로 게시된 자를 말한다.

#### **제4조 (기본방침)**

② **실효적인 전략물자수출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70조 (자율준수체제의 정의 및 운영원칙)의 규정에 의한 독립성의 원칙과 책임성의 원칙이 구현되도록 자율수출관리기구를 구성·운영한다.**

등을 수입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원형대로 수출하는 것과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하는 제조가공한 물품등을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 삭제

#### 삭제

⑧ “우려거래자”라 함은 국제안보 및 세계평화를 위해 무역거래가 제한되거나 무역거래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70조 (자율준수체제의 정의 및 운영원칙)의 규정에 의거, 독립적인 수출거래심사기구인 “자율수출관리기구”를 갖추고, 전략물자수출관리업무인 “자율수출관리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수출관리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서 최고 책임자로부터 실무담당자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소재가 명확해야 한다.**